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4. 21 선고 2022가단833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3. 17.

판 결 선 고 2023. 4. 2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충남 홍성군 E 대 1,322㎡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5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3. 6. 접수 제4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

원고는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(이 법원 2013차3173호)을 신청하여, 2013.

6. 5. ‘D는 원고에게 59,174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. 6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,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D의 처분행위 : 이 사건 증여계약

D는 2018. 3. 5.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충남 홍성군 E 대 1,322㎡(이하 이 사건 토지) 중 1/4 지분을 증여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는 2018. 3. 6. 이 사건 토지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5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)를 마쳤다.

다. D의 무자력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8. 3. 5. 기준 D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

115,202,861원(= 원금 59,174,000원 + 2013. 6. 12.부터 2018. 3. 5.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,028,861원1))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,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1/4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각 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. 3. 5. 당시 원고의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은 115,202,861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피고는 F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가 위 면책적 인수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(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4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, 채무자인 D에게 위와 같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(2) 피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D에게는 F에 대한 130,000,300원의 채권, 시흥시 G 소재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(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)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의 판단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일반 책임재산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변제가능성이 확실하고 환가가능성도 쉽다고 인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).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, 을 제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주장하는 D의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. 이는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.

ú 2014. 2. 17. D의 F에 대한 조정조서상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.

ú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2014. 2. 17. D가 F에게 양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,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까지 D가 위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.

ú 게다가 2014. 2. 17.자 조정조서에 의하면, F에 대한 채권은 D의 F에 대한 시흥시 H아파트 I호의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어서, 그

자체만 분리하여 적극재산으로 반영하기 어렵다.

ú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D의 F에 대한 위 채권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

피고는, 『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였던 1/4 지분에 관하여 2018. 2. 6.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지자 2018. 3. 2. 충남신용보증재단에 D의 채무금 6,353,075원을 변제하여 2018. 3. 6. 위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, 이 사건 토지 중 1/4 지분의 가격은 9,452,300원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』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, 위 주장시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피고의 위 주장이, 피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하여 갖게 된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,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,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),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최보원

1) = 59,174,000원 × 1728/365 × 연 20%, 원 미만 버림